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7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업무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임사무 조정 ⇒ 본청 이관
 - 지방세 100,000원미만 결손처분 (삭제)
 - 균유재산임대료 조정 부과징수 (삭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중 일련번호란중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연번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연번	사 무 명	근 거 법 령
4	○ 지방세 100,000미만 결손처분	○ 지방세법 제 4조	<삭제>	<삭제>	<삭제>
8	○ 공유재산임대료 조정 부과징수	○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2 조	<삭제>	<삭제>	<삭제>